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4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86,7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하여 피고 B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1~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는 2019년 1월경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이하 ‘종전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즉 종전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원고의 소장에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을 초과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21,571,291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2008. 7. 25., 2009. 2. 13., 2009. 3. 31., 2010. 11. 18., 2011. 4. 1. 각 대여금에 대한 제한 초과 이자 금액의 합계와 동일하여 위 각 날짜의 대여금이 종전의 소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종전의 소에서 제출한 소장이나 거래내역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2014. 7. 25., 2014. 7. 26., 2016. 5. 13. 각 대여금도 종전의 소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원고는 2019. 2. 1.경 종전의 소와 관련하여 피고 B과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민,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음은 물론 앞으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서 날인 후 즉시 취하하고, 민, 형사상 소 또한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본 합의서에 서명날인함’이라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종전의 소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제소 합의가 원고의 공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도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피고 C에 대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 C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D 또는 피고 B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라거나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